

비밀보장계약서

○○주식회사(이하 "갑"이라 함)와 ○○주식회사(이하 "을"이라 함)는 ○○의 연구 개발(이하 「본 건 개발」이라 함)을 위해 갑이 을에게 개시하는 갑의 비밀사항 취급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- 제1조(비밀사항) 본 계약에서 비밀사항이란 문서, 도면,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되거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으로 기록된 갑이 보유한 갑의 기술상, 영업상 기타 갑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 및 정보로 갑이 을에게 개시한 시점에서 갑이 비밀로써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. 단,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.
 - 1. 을이 갑으로부터 개시를 받은 시점에서 이미 공지로 되어있는 것
 - 2. 을이 갑으로부터 개시를 받은 후에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로 된 것을 을이 증명할 수 있는 것
 - 3. 을이 갑으로부터 개시를 받기 전에 을이 스스로 얻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정당한 수단으로 입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
- 제2조(비밀유지의무) ①을은 비밀사항을 엄중히 지키며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 에 의한 승낙 없이 이것을 제3자에게 개시 혹은 누설해서는 안된다.
 - ②을은 앞 항의 갑의 승낙을 얻은 경우라도 해당 제3자가 계약상 을의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갑에게 지울 것을 확약하는 서면을 갑에게 제출하기까지는 해당 제3자에 대해 비밀사항을 개시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3자에게 비밀사항을 개시 한 후는 해당 제3자의 갑에 대한 의무이행에 대해 해당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 을 진다.
- 제3조(사용목적) 을은 비밀사항을 본 건 개발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.
- 제4조(개시범위) ①을은 비밀사항을 본 건 개발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사항을 알 필요가 있는 을의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시할 수가 있다. 단, 을은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대해 본 계약상 을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.

②을은 앞 항에 기초하여 을의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대해 비밀사항을 개형 라고 할 때는 사전에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성명 및 해당 담당자 또는 업원에게 개시할 비밀사항의 범위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. 갑에게 통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다.

- 제5조(복사) ①을은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, 도면,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,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.
 - ②을은 본 건 개발이 완료하였을 때 또는 중지 혹은 중단되었을 때 혹은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는 곧바로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, 도면, 기타서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.
- 제6조(조사권) 갑은 을의 영업시간중 언제라도 을의 사무소에 들러 을의 본 계약 상의 의무이행상황을 조사할 수가 있다.
- 제7조(손해금액) 비밀사항이 제3자가 알게 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해서 일금 ○○○원을 손해금액으로 지불해야 한다. 단,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 해 나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을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.
- **제8조(유효기간)** 본 계약은 본 건 개발이 완료하거나 중지 혹은 중단된 후라고 하더라도 ○년간은 효력을 갖는다.

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・을 기명・날인후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.

2000년 0월 0일

	주	소					
갑	성 또 상	명 는 호	인	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	-	전 화 번 호	
0]ग	주	소					
	성 또 상	명 儿 호	인	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	-	전 화 번 호	